# 『소방안전관리보조자』실무교육(선임자) 안내



(Ver 24,1)

		(ver entry)
3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시행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과정명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선임자) 교육
교육	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및 자격(붙임 1참조), 선·해임 안내(붙임 2참조)  관련 근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주기	• 선임된 날부터 6개월(3개월) 이내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구 분			주 요 내 용		
	• 교육과정 등				
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 장소	
E-7 40	집합과정	소집교육	4시간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 근거 : 화자	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1조	
	• 교육내용				
	교육과정	기호	· 반	심화반	
	교육대상	최초 선임자		선임경력 2년 이상 (보조자 실무교육 1회 이상 수료자)	
교육 내용	교육내용	소방안전관리제도     피난·방화 시설의 관리요령     소방시설의 주요 오동작 조치방법     소방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		소방관계법령     피난·방화 시설의 관리요령     화재 시 대응요령     소방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	
		과정은 선임경력 등 · 자유롭게 신청 기		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 <b>령력 무관)</b>	
교육 흐름	- 교육안내문 - 안전원사이.	2 2 42111457	수기한 해당월의 통해 본인이 희망		
교육 일정	• 안전원 홈페(	미지(www.kfsi.or.kl	· <u>)</u> 실무교육 일정	참고	
교육 참가/		·!분증, <u>선임된</u> 자 <sup>2</sup> 해당사항 없음 ¾		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서 선임신고 필수	

구 분	주 요 내 용				
실무교육 수수료					
_ , _ ,					
	• 과태료(50만원) 부과				
	관련 근거 : 법률 제52조제3항(과태료) - 과태료 세부금액 :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교육 미 이수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행정 처리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 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 50만원			
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합니다.) 로 <b>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콩</b> 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sup>2</sup> 교육>실무교육 신청 내역)			

#### 7 분 주 요 내 용 •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환불금액 전 액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 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 액 교육수수료 환불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없음 • 환불시 주의사항 1.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지부(지역) 연락처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 02-850-1392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 지부별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 **강원지부**(강원 횡성군) 033-345-2119 연락처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31-2393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063-212-8315 032-569-1971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055-237-2071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제주지부**(제주 제주시) 064-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

※ [붙임.1]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자격

<b>선임대상</b>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2항	선임인원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2항	<b>선임자격</b>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2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		다격 및 인원기준(제25조2항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 자격이 있는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	1명	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수료자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 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 이 있는 사람

\* 예외사항: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장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 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붙임.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 신고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 <b>소방안전관리보조자</b>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					
	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b>양수</b>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b>경매</b>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b>환가</b>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b>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b> 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지					
보조자						
선임 근거						
	선임 <b>안내를 받은 날.</b>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b>해임, 퇴직 등</b> 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퇴	교				
	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b>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b>					
		i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				
	누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해당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신고 ************************************					
선임신고 절차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 퇴직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_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자격: [붙임.1] 참조 • 특급, 1급, 2급,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벌칙 조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50조제3항) : <b>300만원 이하의 벌금</b>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52조제2항) : <b>200만원 이하의 과태료</b>					

※ 별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0	· - - - - - - - - - - - - - - - - - - -	<b>─                                 </b>	■ ■ <del>■ ■</del> <del>■</del>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	한 즉시		
	상호		용도					
	소재지		81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드	낙면적(m²)	동수	기타		
소방	건축물등	110 100		10 1()	0 1			
안전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	 3급		
관리					 H•전통시장			
대상물	관리권원분리 [ ] 해당							
	-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 ] 해당없음							
		[ ] 소유자 [ ]	관리자 []	점유자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	호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업무대행							
	[ ] 해당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 ] 해당없음							
		기술인력(자격등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120122)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소방인	·전관리자							
(소	[임자)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 <u></u>		87712	기인 되어 교육들시		~ 기배 글			
		 주소						
			[ ] =   [ L	г 1 =	II ELOJ O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등	[ ] 해당	[ ] 0	배당없음 	[ ]발급 [		
선임증	등 등 발급	고 당한전된다자 등 선임증	[ ]발급 [ ]미발급 /	선임이력 획	탁인서	l Jฮᆸ l ]미발급		
「한재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		<b>-</b>	. н 1011	7 11141110		
					년 월	일		
			신고인		단 결	르 (서명 또는 인)		
소방본투	보장 또는 소	· <b>방서장</b> 귀하				(118 12 2)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및 소방안전관리입	l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 수수료						
	우만 해당합니다)							
	·	<sub></sub>		로 선임된 사실	일술 승명할 수	X		
	는 서규 모든 선		d = 포함합니다) 성 방 법					
1 「하재의 예	발 및 아저과리에 괴	고 다라 버류, 제24조제3하에 따라 진		에는 진위라의				

-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닥면적(m²)	동수
대상물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닥면적(m²)	동수
대상물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b>-</b> .					
주소					
수소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닥면적(m²)	동수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닥면적(m²)	동수
소방안전관리	지하충	지상층	연면적(m²) 등급	바닥면적(m²)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명칭(대상)	지하층	지상층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명칭(대상) 대표자	지하층	지상층	등급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명칭(대상)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지하층	지상층	등급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명칭(대상)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주소			등급 전화번호 자격등급 연면적(㎡)	[ ]특급 [ ]1급	[ ]2급 [ ]3급 동수